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112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자	서초구청장(재무과)	제출연월일	2019.05.29.
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형순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638,871백만원
- 세출 결산액 554,899백만원
- 결산상잉여금 83,972백만원

결산상잉여금 83,97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3,913백만원, 사고이월액 17,934백만원, 계속비이월액 7,321백만원 등 이월사업비 29,168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7,33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465백만원임.

(2)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52,185백만원
- 세출 결산액 10,292백만원
- 차 인 잔 액 41,893백만원

결산상잉여금 41,893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 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0원, 계속비이월액 0원 등 이월사업비 0원과 보조금 반납금 8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13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8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16,371백만원으로 2017년말에 비하여 3,2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6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16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통합관리기금 47,108백만원
- 청사건립기금 105,328백만원
-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1,208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6,453백만원
- 사회복지진흥기금 373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3,474백만원
- 보육기금 5,153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2,946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562백만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36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5,072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2,456백만원
- 화훼및농업육성기금 1,522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7,345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2,62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2,109백만원임.

다. 예비비지출

(1) 일반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9,105백만원
- 지출결정액 2,067백만원
- 지 출 액 2,06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0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은 소송배상금 등 총 9건임.

(2) 특별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40,351백만원
- 지출결정액 1,500백만원
- 지 출 액 1,50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0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은 서초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건임.

라. 재무제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13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1)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첨부서류(채권현재액 보고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 재정상태표

- 총 자산 5,245,800백만원
- 총 부채 24,423백만원
- 순 자산 5,221,377백만원

○ 재정운영표

- 사업순원가 157,119백만원
- 관리운영비 132,189백만원
- 비배분비용 18,551백만원
- 비배분수익 19,025백만원
- 재정운영순원가 288,835백만원
- 일반수익 336,702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47,867)백만원

○ 순자산 변동표

- 기초순 자산 5,154,660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47,867)백만원
- 순자산 증가 20,444백만원
- 순자산 감소 1,594백만원
- 기말 순자산 5,221,377백만원임.

마.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달성현황

2018회계연도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24개, 달성 96개, 미달성 33개로 달성율 78.4%임.

바. 채권의 결산

2018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4,211백만원으로서 2017년말에 비하여 93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 내역은

- 일반회계 8,634백만원
- 특별회계 65백만원
- 기 금 5,513백만원임.

사. 채무의 결산

2018회계연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II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결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세항)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
의회사무국	3,956,600	3,956,600	3,721,441	235,160	5.9
지방의회 운영지원	1,543,703	1,543,703	1,410,094	133,609	8.7
의정활동 지원	1,378,080	1,378,080	1,252,603	125,477	9.1
의정활동 홍보	101,140	101,140	98,867	2,273	2.2
의회시설장비 유지관리	64,483	64,483	58,624	5,859	9.1
행정운영경비	2,412,897	2,412,897	2,311,347	101,550	4.2

※ 세입·세출결산서 105 ~ 106쪽 참조

○ 집행율 : 예산현액 39억 5,660만원 대비

- 지출액은 37억 2,144만 1천원으로 집행율은 94.1%
- 전년도 집행율 94%보다 0.1%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억 3,516만원임.

다. 예산의 이 전용 및 이체

- (1)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¹⁾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4조²⁾에 따라 수행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³⁾에 따라 작성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1)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 예산현액 39억 5,660만원 대비
지출액은 37억 2,144만 1천원으로 집행율은 94.1%이며,
- 전년도 집행율 94%보다 0.1%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억 3,516만원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VI

참고사항

- ▣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운영위원회 소관 p105~106)
- ▣ [붙임]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을 15%이상 내역

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집행잔액을 15%이상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항)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비고	
의회사무비	지방의원영지원	의정 운영 지원	국내여비	12,290,	8,620	3,670	29.9	연수, 비교시찰 최소 직원 참가	
			공무원교육여비	3,500	607	2,893	82.7	직원 최소 인원 참가	
			의원상해 부담금	39,600	0	39,600	100.0	사유 미발생	
			배상금등	500	0	500	100.0	사유 미발생	
		의원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20,000	7,419	12,582	62.9	·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전 행사 제한 ·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원 체육대회 미개최	
			의원 국내 여비	의원국내여비	14,790	8,099	6,691	45.2	2018년 상반기 국내연수 의원 다수 불참
				의원국외여비	68,250	55,145	13,105	19.2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 미시행
		의원 역량 개발 비	의원역량개발비	6,500	4,790,	1,710	26.3	의원 개별교육 미참가	
			의회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시설비	3,000	1,650	1,350	45.0	소규모 시설공사 사유 미발생
				도서구입비	4,200	2,723	1,477	35.2	신규도서 수요 감소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14,620	7,601	7,019	48.0	이동전화료, 인터넷 요금 등지출감소	